-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**검 토 보**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의안번호 : 제1570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5. 25.

라. 회부일자 : 2020. 5. 29.

2. 제안사유

○ 상위법령인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별표2의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의 공채 매입 대상 및 매입 대상별 매입 금액을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공채 매입 대상을 기존 소형, 중형, 대형에서 소형, 중형, 대형, 다목적형으로 분류함
- 나.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공채 매입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로 정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철도법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0. 3. 12.~4. 1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"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" 중 "다목적형"의 공채 매입규정을 조례에 규정함 으로써 통일된 매입 금액의 범위를 규정하여 형평성 논란방지 및 친환경 차량구매 촉진에 일부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 의견

■ 도시철도공채 발행 및 매입 관련 규정

○ 현행『도시철도법』에 따르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재원조달을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할 수 있고,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법 시행령 [별표 2]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·도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음

※ 참고 :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 및 매입 근거

「도시철도법」

- 제19조(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) **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** 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<u>조달</u>한다.
 - 3.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
- 제20조(도시철도채권의 발행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 권을 발행할 수 있다.
- 제21조(도시철도채권의 매입)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 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- 1. ~ 4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

제14조(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) 법 제21조에 따른 도<u>시철도채권의 매입</u>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1)에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및 금액을 "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"으로 명시 하고 있음

■ 도시철도공채 매입 대상 추가 관련

○ 현행 법령에서는 이륜자동차 등을 제외²⁾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고.

특히 '비사업용승용차동차'를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'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(이하 "친환경 차량"이라 한다.)' 및 '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(이하 "일반차량"이라 한다.)'로 구분하되 각각을 '소형・중형・대형' 등으로 세분하고 있음

※ 참고 : 비시업용승용치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범위

구분		매입 대상	매입 금액의 범위
	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	<u>소형</u> (길이 4.7미터, 너비 1.7미터, 높이	취득세 과세표준액의
		2.0미터 이하인 것)	100분의 9
		중형(길이·너비·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 형을 초과하는 것. 다만, 길이·너비·높이 모두	취득세 과세표준액의
		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)	100분의 12
		<u>대형</u> (길이·너비·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	취득세 과세표준액의
자동차		는 것)	100분의 20
신규		<u>소형</u> (길이 4.7미터, 너비 1.7미터, 높이	취득세 과세표준액의
신ㅠ 등록	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	2.0미터 이하인 것)	100분의 9
		중형(길이·너비·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 형을 초과하는 것. 다만, 길이·너비·높이 모두	취득세 과세표준액의
		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)	100분의 12
	외의 자동차	대형(길이·너비·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	취득세 과세표준액의
		는 것)	100분의 20
		다목적형	취득세 과세표준액의
		<u>17778</u>	100분의 5

¹⁾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(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)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. 다만,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 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은 도급금액의 100분의 2로 하되 도급금액이 1,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아니한다.

²⁾ 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

○ 하지만, 비사업용승용자동차 신규등록시 '일반차량'에 채권매입 대상 으로 구분되어 있는 '다목적형'이 '친환경 차량'에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

'다목적형' 친환경 차량을 신규등록할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공채 매입금액의 범위를 "차량유형에 따라 5%" 또는 "차량크기에 따라 9~20%" 등 상이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혼란 및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

※ 참고: "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" 중 "디목적형" 차량 매입금액 범위

구 분		부과 사유
갑설	5% 부과	 전기 및 수소차의 경우도 차량유형이 다목적 차량의 경우 별도 적용해야 함 일부 자치구의 경우 조례에 따라 4% 발행 ・ 부산시, 대구시의 경우 다목적형 4% 부과
을설	9~20% 부과	- 법령에 전기 및 수소차의 경우 다목적형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외형(구조)에 따라 9~20% 적용

○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내부법률 자문³)에 따르면 "관련 법령에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전기 자동차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례로 '다목적형'에 대해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"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고,

³⁾ **법률자문 회신 2019-1287**[2019.12.27. 법률지원담당관] : 조례 재정 가능함

^{- &}lt;u>조례로</u>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의 경우 다목적형을 매입대상으로 별도 분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<u>100분의 5로 규정하는</u>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
⁻ 다목적형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가 동일함

⁻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매입대상에서 다목적형에 대한 분류를 두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**의도적인 배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**

^{1.}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의 범위에서 **도시철 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**

^{2.} 개정 당시 다목적형 전기·수소차의 개발·양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정(국토부 회신)

^{3.}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다목적형 자동차를 별도 분류하여 매입금액의 범위를 더 낮게 정함

국토교통부에서는 '법 개정 당시 다목적형 친환경 차량의 개발·양산 수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다른 시·도의 경우⁴)에 이미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'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

※ 침교 : 도시철도채권 CI본적영에 대한 회신 LIH용(국토부 철도투자/개발과-4093(19.12.16.))

종류	질의내용	회신내용
1	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〔별표2〕제1호 가목 1) "가)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" 항목 내에 다목적형에 대한 분류를 두지 않은 이유는?	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[별표2] 제1호 가목 1)은 개발·양산 추이에 따라 배기량이 없는 전기·수소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의 길이·너비 및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,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되, 개정 당시 다목적형 전기·수소차 개발·양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정(2012. 3. 13)된 것으로 사료됩니다.
2	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[별표2] 제1호 가목 1) "가)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" 중에서 다목적형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해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?	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르면「도시철도법」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 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<u>[별</u> 표 2]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다른 시·도의 경우 에도 이미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
3	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다목적형 자동차에 대해 <u>채권매입 의무를 완화하는</u> 내용으로 시·도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?	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^{4) &}lt;u>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</u> 제3조(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) ① <u>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</u> 금액은 <u>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</u>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상한액으로 한다. 다만, 자동차 신규등록(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)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.

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3조(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)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다. <u>다만,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</u> 등록하거나 각종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가. 신규등록

3) 다목적형 :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

^{1.} 비사업용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) <개정 2016. 12. 30.> 가. 신규등록

⁽³⁾ 다목적형 :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

- 특히, 친환경 차량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높은 공채 매입률을 적용받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차량 확대를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기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
- 따라서,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차량 신규등록시 '다목적형'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기준을 '취득세 과세표준액의 5%'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

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혼란 및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구매촉진 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- 다만 상위 법령에 "다목적형"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없이 내부법률 자문 및 국토부 회신의견에 따라 조례에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 보다 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관련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- 또한,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를 규모별, 유형 별로 구분5)하고 있고,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도 규모별 구분의 경우

^{5) 1.} 규모별 세부기준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1])

종류	소형	중형	대형
	배기량이 1,600시시 미만이	배기량이 1,600시시 이상	배기량이 2,000시시 이상이
승용	고, 길이 4.7미터·너비 1.7	2,000시시 미만이거나, 길	거나, 길이·너비·높이 모두 소
자동차	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	이·너비·높이 중 어느 하나라	형을 초과하는 것
	것	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	

2. 유형별 세부기준

종류	유형별	세부기준
승용	일반형	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,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

이를 준용하고 있으나 "다목적형"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"다목적형"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도록 개정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자동차		선형인 것
	승용겸화물형	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
	리모지처	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
	다목적형	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<u>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</u>
	기타형	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